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지하안전관리 체계
보완 및 강화 》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47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2547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1
4. 검토의견	3
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안 제12조제1항)	3
나.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3조의2 신설)	7
다. 지하안전에 관한 장비의 연구·개발(안 제13조제1항)	12
라.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지하안전자문단의 자문사항에 전문인력의 양성, 장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및 제11조)	14
마.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등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18
바. 공사중지명령 고시 및 보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조사 권한 부여 (안 제21조제3항 및 제5항)	29
사. 유출지하수 등으로 지반침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환경부장관 등 에게 조치 요청(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8조제1항)	37
아. 지하안전평가등 실시 및 대행 시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및 국회 보고 (안 제24조제4항 신설 및 제27조)	42

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련 권한 및 사무를 시·도지사로부터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이관(안 제25조, 제28조 및 제32조)	46
차.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에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 노력 (안 제33조제2항 신설)	50
카. 안전점검 대상에 지하수의 수량 정보 추가 등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54
타.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 추가 등 (안 제35조)	60
파.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의무화 등(안 제46조)	65
하. 지하안전정보체계 관리대상 추가 등(안 제47조)	73

I.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제2212547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8인

나. 발 의 일 : 2025. 8. 29.

다. 회 부 일 : 2025. 9. 1.

2. 제안이유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으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권한,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등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안전에 관한 자문,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추가하고,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

식승인·검정제도 도입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5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및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등).

바. 유출지하수등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46조).

3. 검토의견

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 (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u>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u> ② (생략)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u>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u> ----- ----- ----- <u>설치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2조¹⁾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에,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226개 시·군·구 중 79개 시·도에 설치되어, 1개 시·도 및 147개 시·군·구에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

(단위: 개, 회)

구분	설치 지방자치단체 수	개최 횟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시·도 (17)	16	14	18	18	13	63
시·군·구 (226)	79	38	53	65	71	227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 재구성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²⁾의 수립 및 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하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정책과 관련된 심의라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2월 수립한 제2차 국가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이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계획 수립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거나,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과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 간의 연계·정합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³⁾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의 내실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⁴⁾

3)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2024.12. pp.15.-16. 발췌

□ 시·도 관리계획 주요 내용

- (개선할 점) 지자체별 관리계획 간 편차가 존재하며 세부실행과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보다는 상위계획을 답습하는 사례 존재
-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등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아 계획수립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
- 또한 관리계획 개선 시 실적점검 결과 또는 여건 변화 등의 고려 외에 용역 수행기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견

□ 시·군·구 관리계획 주요 내용

- (상위계획 반영) 시·군·구 관리계획은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
- 대도시의 경우, 상위 광역지자체의 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소관 관리계획 방향, 목표 및 추진 과제 등을 설정
- 반면, **중소도시 등은 시·도 관리계획과의 연계·정합성이 부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나열한 사례도 발견

4)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 2024.12. p.44. 발췌

개정안은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운영 현황,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내실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심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내실 있게 수립·집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 그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전략2-〈1〉] 지역-현장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강화

② 지하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위원회 활성화) 지자체 지하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지방지하안전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마련·보급 및 우수사례 공유('25)

나.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u>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하안전관리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한 교육훈련 실시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과 관련된 현행법령 등의 규정으로는, 현행법 제14조 등에서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도위험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⁵⁾이라 함)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⁶⁾⁷⁾

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②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④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조사항목·조사기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②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법 시행령 제15조⁸⁾ 및 시행규칙 제5조⁹⁾에서 지하안전평가등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⁰⁾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본다.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로 본다.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0) 국토교통부고시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하사업개발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업무 종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9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등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지하사업개발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업무 종사자
3.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종사자
4. 그 밖에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자

까지 연간 약 1,100~1,900명이 관련 교육을 받고 있음.

【 최근 5년(2020~2024년) 지하안전 분야 교육 실시 현황 】

구분	국토안전 관리원	건설기술 교육원	(재)건설산업 교육원	합계
2020년	26명	877명	305명	1,208
2021년	53명	922명	947명	1,922
2022년	10명	483명	657명	1,150
2023년	77명	569명	502명	1,148
2024년	100명	660명	718명	1,478

※자료: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서는 이를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
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그 책무
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
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
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전문 인력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등은 유사 입법례¹¹⁾와 같이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¹²⁾을 통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지하안전에 관한 장비의 연구·개발(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장비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 ----- ----- 기술·장비 -----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에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 외에 ‘장비’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동 계획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GPR(지표투과레이더)¹³⁾ 장비의 투과 범위(약 2 m)가 보다 심층의 공동(空洞)까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통한 공동(空洞)조사 확대, GPR 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신기술 검토,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음.¹⁴⁾

13)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함과 아울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서 개선 및 보완을 위한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기술을 활용한 ‘장비’의 연구·개발 또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지하안전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장비’는 ‘기술’의 한 부분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14)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2024.12. pp.33.-50.

라.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지하안전자문단 자문사항에 전문인력의
양성, 장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u>교육</u>·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u>기술</u> 등의 연구·<u>개발</u>에 관한 사항 5.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 2. (생략) 3. 지하안전 <u>기술</u> 및 기준의 연구·<u>개발</u>에 관한 사항 <신설>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 <u>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u> ----- 4. ----- <u>기술·장비</u> ----- <u>개발 및 품질관리</u>----- 5.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u>기술·장비</u> ----- ---<u>개발 및 품질관리</u>----- -- <u>3의2.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u>

현행	개정안
1. ~ 2. (생략)	<u>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가의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¹⁵⁾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자문단의 자문사항에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과 ‘지하안전 장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안 제3조의²¹⁶⁾에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¹⁷⁾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대상에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 외에 ‘장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1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6) 개정안

제3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하안전관리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양성기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개정안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장비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6조¹⁸⁾는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장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및 장비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이며,

개정안 제11조¹⁹⁾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는 자문단에 대하여 현행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도 자문사항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에 전문

18) 개정안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장비 등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 개정안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장비 및 기준의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지하안전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산학 협력 및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인력 양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장비’는 ‘기술’의 한 부분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품질관리’는 민간의 책임이 크므로 기본계획이나 자문단의 자문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는 입장임.

마.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등(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의2(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측정기기·장비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및 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측정기기 및 장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장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장비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

현행	개정안
	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장비를 지하안전관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장비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⑥ 형식승인·변경승인·형식승인 취소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다. 제13조의3(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는 것 3. 측정기기·장비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추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3항에 따른 지정·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및 출입·조사,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검정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 및 장비의 제작·수입 또는 설치(이하 “제작등”이라 한다)

현행	개정안
	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장비(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에게 지하안전관리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檢定)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검정·교정을 받은 측정기기·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장비에 대하여는 검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장비의 제작등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측정기기·장비를 제공받아 지하안전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교정의 유효기간(이하 “검정유효기간”이라 한다)만료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현행	개정안
<신설>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검정 유효기간은 측정기기·장비의 종류별로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검정이 면제되지 아니한 측정기기·장비와 제3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측정기기·장비를 지하안전관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측정기기·장비와 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측정기기·장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장비의 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4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4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현행	개정안
	<u>대행한 경우</u>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u>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⑧ 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동 계획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GPR(지표투과레이더)²⁰⁾ 장비의 투과 범위(약 2 m)가 보다 심층의 공동(空洞)까지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20)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통한 공동(空洞)조사 확대, GPR 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한 신기술 검토,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지하안전관리 기술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음.²¹⁾

이에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안 제13조²²⁾에서 지하안전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에서는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제작 또는 수입을 통해 지하안전관리 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기기·장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의 구성 체계를 살펴보면, 안 제13조의2에서는 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의3은 형식승인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

21) 국토교통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2024.12. pp.33.-50.

22) 개정안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장비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의4는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장비가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검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의5는 검정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사 입법례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가 있음.

【 개정안 및 「기상관측표준화법」의 형식승인제도 구성체계 】

개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의2(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형식승인 등)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3조의3(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의4(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의 검정 등)	제13조(기상측기의 검정 등)
제13조의5(지하안전 측정기기·장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중경사계·지표침하계 등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는 건설공사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²³⁾과 관련된 행정규칙인 「건설 계측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통부고시)²⁴⁾에서 계측기기 관련 사항(계측기기 선정, 보정, 성능검사, 설치, 관리단계, 관리기준 초과 시 조치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중복의 우려가 있으며, 계측기기 신뢰도 등 확보를 위한 법률 규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전반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거나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입법례와 같이 별도의 계측 관련 법률을 신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의2(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4)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고시) - KCS 10 50 10 “건설 계측공사”

바. 공사중지명령 고시 및 보고, 국토안전관리원에 조사 권한 부여
(안 제21조제3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 ② (생략)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u>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u>	③ ----- ----- ----- ----- ----- <u>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u>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u>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 ----- ----- ----- <u>소속 공무원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u> ----- ----- -----.

개정안 제21조제3항은 승인기관의 장²⁵⁾으로 하여금 승인등²⁶⁾을 받

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그로 인해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외에,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제21조제3항과 관련해서는, 지하개발사업 실시 전 지하안전평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현행법 제15조²⁷⁾는 제1항에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라 함)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함)는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실시 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함)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현행법 제16조²⁸⁾는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현행법 제17조²⁹⁾는 제1항에서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도록 하고 있음.

다음, 현행법 제21조³⁰⁾는 제1항에서 지하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 제21조제3항은 현행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아야

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의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한 후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르면,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하안전평가³¹⁾를 실시한 후, 지하안전평가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적절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사업 시행 시에는 해당 협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은 협의 내용 이행 의무를 위반한 지하개발사업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외에 그 사실과 내용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제재를 추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개정안 제21조5항³²⁾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의 협의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³³⁾에 따른 ‘소속 공무원’ 외에 ‘국토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성 활용을 통해 협의 내용 이행 관련 조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공사중지명령은 고시 등을 통한 대외 공개 없이도 안전 확보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공사중지명령 대외 공개 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례³⁴⁾와 같이 공사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사업장 출입·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32) 개정안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제16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4)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례³⁵⁾를 고려하여 공무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5) 「건설기술 진흥법」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사. 유출지하수 등으로 지반침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환경부장관 등에게 조치 요청(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38조제1항)

[illegible]

현행	개정안
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³⁶⁾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³⁷⁾

36)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철·터널 등 지하시설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또는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1동: 1일 30톤

에 따른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³⁸⁾

현행법 제22조의2제1항³⁹⁾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7) 「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 연결된 지하수의 공급원이 되는 상류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지하수가 상당히 부존된 지층이 있는 지역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중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개발·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지하수개발 가능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5.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 지반침하 또는 하천이 마르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7.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8) 환경부는 2025.10.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는바, 개정안 심사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3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주변 지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지하개발 사업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현행법 제38조제1항40)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의 원인이 지하수의 지나친 유출 또는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한 경우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관계인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4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지하시설물관리자등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한 유출지하수 또는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장관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관리를 담당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평가 시 지하수위 저하량, 지하수 유출량 및 변위 관련 계측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안전을 관리 중이고, 지반침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상황에서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므로, 관리기준 초과 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현행 체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임.

아. 지하안전평가등 실시 및 대행 시 의무 준수 여부 점검 및
국회 보고(안 제24조제4항 신설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u>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 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준수하여야 한다.</u>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 사항) ----- ----- <u>준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함)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4조제2항⁴¹⁾은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①다른 지하안전평가서·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함)의 내용 복제 금지, ②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한 작성 금지, ③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 기초가 되는 자료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24조제1항⁴²⁾은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⁴³⁾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4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②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4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27조⁴⁴⁾는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①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 복제 금지, ②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금지, ③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 기초가 되는 자료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의무 사항들은 지하안전평가등의 결과가 기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 결과의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명시한 것으로 보이며,

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개정안은 지하개발사업자·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자들의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현행법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의무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거짓 또는 부실을 방지하고 아울러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평가등의 실시 및 대행과 관련된 의무 준수 여부 점검 결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가 필요한 정도의 주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필요시 「국회법」 등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와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련 권한 및 사무를 시·도지사로부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관(안 제25조, 제28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u>시·도지사</u> 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 ----- ----- ----- <u>국토교통부장관</u> ----- ----- -----.
② <u>시·도지사</u> 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u>국토교통부장관</u> 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u> 은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u>시·도지사</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 ----- ----- ----- <u>국토교통부장관</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u>시·도지사</u>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 ----- <u>국토교통부장관</u> ----- -----.
⑥ <u>시·도지사</u> 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u>국토교통부장관</u> 은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u>시·도지사</u> 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u> 은 -----

현행	개정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략) ② (생략)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 ② (생략) ③ <u>시·도지사는</u>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에게</u> <u>보고</u>하여야 한다.	----- ----- ----- -----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u> 매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시·도지사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관련 권한 및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5조제1항⁴⁵⁾은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4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등’⁴⁶⁾⁴⁷⁾에는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해당되는데,

이는 지하개발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 통해 지반침하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등 지하개발 사업 시행 및 지하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와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에 해당함.

4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 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25조, 제28조, 제32조의 조문 중 ‘시·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권한 및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으로,

연간 100건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가운데 2025년에는 서울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부산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연이은 발생으로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하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관련된 권한 및 사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행사하고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지하안전평가등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와의 접근성,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고려할 때 등록·등록취소 등 행정업무는 해당 업체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토교통부는 정책의 수립·시행, 법·제도 개선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차.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에 적정 수준의 대가 지급 노력
(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생략) <신설>	제33조(지하안전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 강화와 지하안전평가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지하안전평가등의 인건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하안전평가등⁴⁸⁾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 강화와 지하안전평가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고,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지하안전평가등의 인건비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비용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4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제35조 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침은 제106조부터 제112조까지⁴⁹⁾에서

49)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06조(대행비용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대행비용의 산정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2. 대가산출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선택과업비로 한다.
 3.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 ②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07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지하안전평가등의 업무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인력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하안전평가의 소요인력은별표 8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소요인력은별표 9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3.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소요인력은별표 10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소요인력은별표 11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5. 각 업무별, 규모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평가규모에 따른 할증률 적용에 있어서 평가규모가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따른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⑤ 소요인력의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제10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등 지하안전평가등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로 산정한다.

1.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기준을 적용한다.
2. 인쇄비, 특수자료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109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간접비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한다.

제110조(기술료) 기술료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등이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 40%로 한다.

제111조(선택과업비) 선택과업비는 지하안전평가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으로서별표 8부터별표 11까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지반조사표준품셈」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지반조사표준품셈」에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비를 산정한다.

대행비용 산정방식,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선택과업비, 부가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안전평가등 중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경우 월 단위⁵⁰⁾⁵¹⁾로 실시하여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를 제출해야 하고, 실시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그 대가를 업무량에 비례

제112조(부가비용의 산정) 지하안전평가서 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검토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현장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 또는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작성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검토기관의 지하안전평가서 검토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
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평가업무 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④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 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3조의2(월간보고) ① 영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에는 제23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내용에는 시공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국토교통부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행하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제출은 최초보고서,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시기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3.3.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출 시기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는 월간(최초보고서, 월간보고서, 최종보고서)으로 시기마다 제출하며 착공시 지하안전평가서 및 협의내용 반영여부를 포함하여 최초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월 시공현황 및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지하공사 완료 후 전체 조사된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자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개정4판 2024.10., 국토교통부) pp.9.-11. 중 발췌

하여 적정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에 관한 계약에 적정한 수준의 대가가 지급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여,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의 대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지하안전평가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한 인건비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행과 같이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통해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카. 안전점검 대상에 지하수의 수량 정보 추가 등
(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u>주변 지반</u> 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u>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 <u>주변 지반, 지하수의 수량</u> ----- ----- ----- -----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u>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u>연 1회 이상</u>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u>검토하여</u>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u>분기마다</u> ----- ----- ----- <u>검토</u> <u>하고,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 안전점검 대상 및 안전점검 결과 통보 대상 추가

현행법 제34조제1항⁵²⁾은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소관 지하시설

5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 제34조제1항은 안전점검의 대상에 현행법에 따
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외에 ‘지하수의 수량’을 추가하고, 안전
점검 결과 통보 대상에 현행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국
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있음.

먼저, 안전점검의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
표 3⁵³⁾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으로 지반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를 매 5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안전평가’와 관련된 현행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
법은 별표 3과 같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254)는 평가항목 및 방법으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지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그 수량을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됨.

다음, 안전점검 결과 통보 대상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47조제1항⁵⁵⁾

5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지하안전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평가항목	평가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透水)시험 라.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u>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u>	<u>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u> <u>나.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u> <u>다.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u>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5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현행법 제47조제2항56)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⁵⁷⁾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7)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하안전정보의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

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제출 요청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여 안전점검 관련 정보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속하게 도달되도록 하고, 해당 정보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2)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 단축 등

현행법 제34조제2항⁵⁸⁾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5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 제34조제2항은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분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생략하기 위한 절차에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생략에 필요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실시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하안전관리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 대상에 지하수의 수량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시설 내부의 유량·누수 등만 점검이 가능하고, 지하수 수량은 국가지하수관측망 등을 활용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안전점검 결과의 국토교통부장관 통보, 안전관리 실태점검 주기 단축 및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생략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입장임.

타.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 추가 등
(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 ----- ----- ----- -----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 직원 및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

현행	개정안
할 수 있다.	----- -----.
④ <u>시장·군수·구청장</u> 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u>점유자</u>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④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u> ----- ----- ----- <u>점유자</u>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지역 주민----- ----- ----- -----.
⑤ <u>시장·군수·구청장</u> 은 중점관리 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u>고시하여야</u>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⑤ <u>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u> ----- ----- ----- <u>관보</u>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u>고시하여야</u> 한다.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35조⁵⁹⁾는 지반침하위험도 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5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안전점검⁶⁰⁾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⁶¹⁾을 받은 경우에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

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함)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 제35조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고,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 현지조사단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고,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대상에 ‘지역 주민을 추가’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는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지반침하 위험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 검토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국토교통부는 지하침하 예방 대책 수립,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하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신중검토), 현지조사단에 국토안전관리원을 포함함으로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동의),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하고 고시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확대하는 경우(동의) 중점관리대상 지정·고시 사실을 지역 주민에게 별도로 알려줄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함.

파.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조사 의무화 등(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 ② (생략)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 발생한 경우 -----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⑥ 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제4항에 따른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 결과를 ----- 통보하여야 하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

현행	개정안
⑦ (생략)	<u>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하며,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 제46조는 ①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조사위원회”라 함) 또는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지방조사위원회”라 함)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를 의무화하고(안 제46조제3항 및 제4항), ②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 권고 또는 건의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6항 후단).

(1)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의무화

현행법 제46조⁶²⁾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6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대하여 중앙조사위원회 또는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발생 사고 건수는 102건임에 비하여 지방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례가 2건이고, 2025년에는 8월 31일까지 발생 사고 건수는 144건임에 비하여 중앙조사위원회 또는 지방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사례가 총 5건으로, 지반침하 사고 발생 건수와 중앙 또는 지방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건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반침하 사고 발생 및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사고발생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중앙조사위원회	지방조사위원회
2024년	102	-	2
2025년 (8.31.까지 발생 사고)	144	2	3

※자료: 국토교통부

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중앙 또는 지방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 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법 제16조제2항 각 호⁶³⁾에

6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다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연구기관 등이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 제38조⁶⁴⁾는 중앙조사위원회의 위원을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초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6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과 연구기관 등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여, 지반침하 사고의 조사에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의무화는 신속한 현장 대처 및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현행과 같이 지반침하 사고의 규모·피해 정도·사고원인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재발방지대책 권고 또는 건의 및 이행

현행법 시행령 제40조⁶⁵⁾는 중앙조사위원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활동을 완료한 날

6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제41조⁶⁶⁾는 지방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중앙사고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개정안은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하며,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재발방지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면서, 재발방지대책이 활용되는 체계를 사고조사 결과 도출된 재발방지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또는 건의 수용, 조치 결과의 보고

6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의 단계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2항⁶⁷⁾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개정안과 같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이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67)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하. 지하안전정보체계 관리대상 추가 등(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생략) 1. ~ 2. (생략) <u><신설></u> 3. ~ 8. (생략) ② ~ ③ (생략)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u> <u>2의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해제·고시,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정비계획 등</u> <u>2의4.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권고·건의·조치 결과</u>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지하안전정보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관리 대상 정보에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47조제1항⁶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안전관리

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관리 대상 정보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제1호),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제2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47조제1항은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관리 대상 정보에
제14조제1항69)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제20조제1항70)에 따른 착공후

6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
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지하안전조사, 제23조제1항71)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35조제1항72)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안 제2호의2 신설), 제35조제2항73)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해제·고시, 제37조74)에 따른 중점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7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착공후지하안전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에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 개정안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73) 개정안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7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5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관리대상의 안전 확보, 제40조제1항⁷⁵⁾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정비계획 등 (안 제2호의3 신설), 제46조제3항 및 제4항⁷⁶⁾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권고·건의·조치 결과(안 제2호의4 신설)추가하는 내용임.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 포함 사항 비교】

현행법	개정안
1.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설>	2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
<신설>	2의3.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해제·고시,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안전 확보,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정비계획 등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개정안

제46조(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 및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u><신설></u> 3.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u>2의4.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권고·건의·조치 결과</u> 3 ~ 8. (현행과 같음)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 제47조제1항

개정안이 관리 대상 정보에 추가하려는 사항들은 지하개발사업 또는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시행 또는 관리하여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해당하는바,

개정안은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 등 지하개발 사업 또는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시행·관리를 위한 사항들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정보들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⁷⁷⁾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7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입법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안 제47조제1항제2호의4(중앙지하사고 조사위원회 및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권고·건의·조치 결과) 중 사고 조사 결과보고서, 조치결과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에 동의하며, 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지하안전평가 및 착공후지하 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결과 등) 및 제2호의3(중점관리 대상 지정·변경·해제·고시, 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중점관리대상정비계획 등)은 현행법 제47조제1항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